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403-01

일부개정 2011. 6. 30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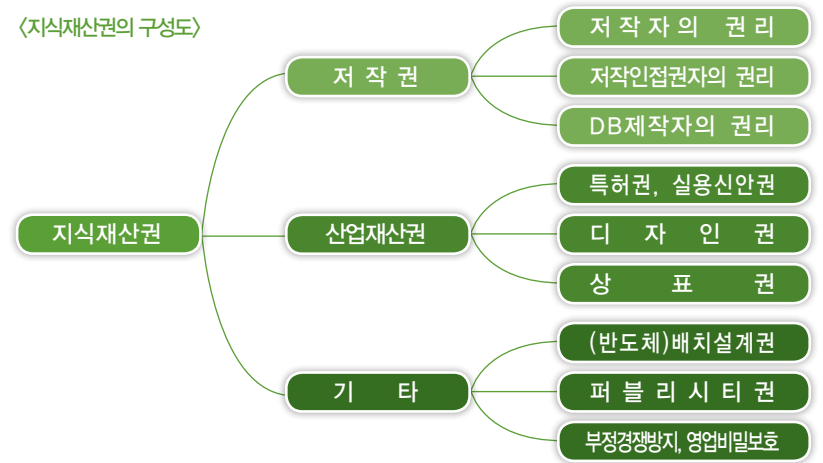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I. 저작권법 개요	03
II.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12
III. 개정 추진 경과	23
IV. 개정 배경 및 이유	24
V. 주요 개정 내용	26
VI. 조문별 개정 내용	28
부록	96
저작권법	96
저작권법 시행령	164
저작권법 시행규칙	200

I. 저작권법 개요

〈지식재산권의 구성도〉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저작물

가.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나. 저작물의 종류

-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 음악저작물
- ▶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 영상저작물
- ▶ 지도·도표·설계도·악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3.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4.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가. 저작인격권

- ▶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 ▶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 **전시권**: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5.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가.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나.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일신전속성)

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6.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됨(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 저작재산권 제한

-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 학교 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7.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함

▶ 추정력

-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과실 추정(입증책임의 전환)**: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했을 때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

▶ **대항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 놓는 경우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됨

8. 배타적발행권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배타적발행권자(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복제·배포,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맨 처음 복제·배포, 복제·전송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9. 저작인접권

가. 개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임

나. 저작인접권자

-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실연에 한함), 방송권(녹음된 실연 제외), 전송권, 판매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신보상청구권, 판매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신보상청구권, 판매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됨.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함

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 **실연**: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 **음반**: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 **방송**: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은 2013년 8월일부터 시행

1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일정한 보호를 받음

- ▶ 권리의 내용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짐
- ▶ 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 제작, 갱신·검증·보충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11. 침해 구제

가. 원칙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민사 구제 및 형사 제재 신청이 가능함

나. 민사 구제

-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

다. 형사 제재

- ▶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 저작권 침해되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
-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음

II.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포 일
제 정	- 신규제정	1957. 1. 28.
제 1 차	-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	1986. 12. 31.
제 2 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989. 12. 30.
제 3 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990. 12. 27.
제 4 차	-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1. 3. 8.
제 5 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993. 3. 6.
제 6 차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등	1994. 1. 7.
제 7 차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4. 3. 24.
제 8 차	-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 12. 6.
제 9 차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 12. 13.
제 10 차	- 전송권 도입,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 1. 12.
제 11 차	- DB제작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 7. 10.
제 12 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 10. 16.
제 13 차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2006. 10. 4.
제 14 차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	2006. 12. 28.
제 15 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008. 2. 29.
제 16 차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등	2009. 3. 25.
제 17 차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 4. 22.
제 18 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009. 7. 31.
제 19 차	- 한·EU FTA 합의 사항 반영	2011. 6. 30.
제 20 차	- 한·미 FTA 합의 사항 반영	2011. 12. 2.

제정(1957. 1. 28. 법률 제432호)

▶ 전 5장, 본문 7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을 명시
- 무방식주의(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발생) 채택
-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함
-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 설치
-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함
-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천부로 추정함
-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
-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
-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

제1차 개정(전부 개정 1986. 12. 31. / 1987.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 ▶ '세계저작권협약(UCC)'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보호 및 제한 규정 등 정비
- ▶ 전 9장, 본문 10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시
 - 관련 용어 정의, 저작물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함
 -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소급효 불인정)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함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
 - 법인·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단체 등이 되도록 함
 -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
 - 저작권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함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 도입
 - 저작인접권을 신설,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함
 - 실연자: 녹음·녹화·촬영권, 실연방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 음반제작자: 복제·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 방송사업자: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인정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신설
 - 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관리, 대리중개) 제도 신설, 허가제로 함
 -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
 - *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
 - 저작권자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복제물의 부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제2차 개정(일부개정 1989. 12. 30. / 법률 제4183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제3차 개정(일부개정 1990. 12. 27. / 법률 제4268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

제4차 개정(일부개정 1991. 3. 8. / 법률 제4352호)

- ▶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법 → 도서관진흥법)

제5차 개정(일부개정 1993. 3. 6. / 법률 제4541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부장관 → 문화체육부장관)

제6차 개정(일부개정 1994. 1. 7. / 1994. 7. 1. 시행 / 법률 제4717호)

- ▶ 한미지식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 등 저작권보호 강화
- ▶ 주요내용
 -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
 - 교과용도서 보상금 신설(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둠)
 - 음반의 대여권 인정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저작권위탁관리업종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봄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조정

제7차 개정(일부개정 1994. 3. 24. / 법률 제4746호)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차 개정(일부개정 1995. 12. 6. / 1996. 7. 1. 시행 / 법률 제5015호)

- ▶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재정비
- ▶ 주요내용
 -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호함
 - *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 보호 인정
 - * 개정법 시행 전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 인정
 - 단체명의 저작물의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번역권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강제허락제도 폐지
 - 실연자의 녹음·녹화·촬영권을 복제권으로 확대

제9차 개정 (일부개정 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 ▶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 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제10차 개정(일부개정 2000. 1. 12. / 2000. 7. 27. 시행 / 법률 제6134호)

- ▶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확대보급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 ▶ 주요내용
 - 저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복제 면책범위에서 제외(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함)
 -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 * 도서관내, 도서관 간 전송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보상금 지급)
 - 저작권 등록사항 확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제11차 개정(일부개정 2003. 5. 27. / 2003. 7. 10. 시행 / 법률 제6881호)

-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보호함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을 5년으로 함
 - 도서관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도서관의 복제·전송의 범위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로 한정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복제물(출판, 음반)의 부수추정 규정을 삭제,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제12차 개정(일부개정 2004. 10. 16. / 2005. 1. 17. 시행 / 법률 제7233호)

-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제13차 개정(일부개정 2006. 10. 4. / 법률 제8029호)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14차 개정(전부개정 2006. 12. 28. /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101호)

- ▶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WIPO실연음반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
- ▶ 주요내용
 - 각종 정의규정 신설 또는 변경(저작물의 개념 확대,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신설, 발행의 정의 변경, 공중의 정의 신설 등)
 -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 허용
 - 각종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 법정허락 대상에서 외국인 저작물 제외
 -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 보호받는 음반의 범위 확대
 -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등 인정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대여권 강화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상호주의 적용)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신설
-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고정'에서 '발행'한 때로 변경함으로써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 및 과징금 처분 규정 신설 의무강화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변경, 역할 강화
-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제도 도입
-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규정 신설
 - *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제도 도입
- 영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 적용

제15차 개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6차 개정(일부개정 2009. 3. 25. /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529호)

- ▶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함

-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제17차 개정(2009. 4. 22. /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625호)

-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장을 둠
- ▶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 도입
-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 *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 * 프로그램의 저작권산권 제한
 -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 프로그램의 임치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 반복적인 불법 복제·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 *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물 서비스 정지
 - * 불법복제물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제18차 개정(2009. 7. 31. / 2010. 2. 1. 시행 / 법률 제9785호)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차 개정(2011. 6. 30. / 2011. 7. 1. 시행 / 법률 제10807호)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
-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 신설
 -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도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을 구분(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하고,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

제20차 개정(2011. 12. 2. /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110호)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
- ▶ 주요내용
 -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
 -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
 - 배타적발행권을 도입하고,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OSP의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
 - 위조 및 불법리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행위 규정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연혁

▶ 1986년 제정, 2000년 전부개정 등 총 11회 개정

구 분	주 요 내 용	공포일
제 정	- 신규제정	1986. 12. 31.
제 1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	1989. 12. 30.
제 2 차	- 문화공보부의 분리,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993. 3. 6.
제 3 차	- 법인등 업무상 창작요건 대여권 및 업무상 사용자 처벌조항 신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신설, 벌칙 상향조정	1994. 1. 5.
제 4 차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통신망에의 전송·배포자 처벌 - 위탁관리제도의 도입 및 소급보호제도 채택	1995. 12. 6.
제 5 차	- 전송권 및 저작권 관리정보, 교과용도서 게재시 보상금지급조항 신설 -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벌칙 상향조정 등	1998. 12. 30.
제 6 차	-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 및 프로그램 역분석 허용 - 불법복제 단속제도 신설	2000. 1. 28.
제 7 차	- 프로그램 역분석 허용규정 구체화 -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효력 인정 등	2001. 1. 16.
제 8 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감면 신설 - 알선제도 도입 등	2002. 12. 30.
제 9 차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에 따른 조문 문구의 일부 변경	2005. 12. 29.
제 10 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장권고제도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등	2006. 10. 4.
제 11 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	2008. 2. 29.
-	- 저작권법과 통합됨에 따라 폐지	2009. 4. 22.

Ⅲ. 개정 추진 경과

▶ 한·미 FTA 추진 경과

- '07. 4. 2 : 한·미 FTA 타결
- '10. 12. 3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 '11. 6. 3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11. 10. 12 :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통과
- '11. 11. 22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통과
- '12. 3. 15 : 한·미 FTA 발효

▶ 한·EU FTA 추진 경과

- '10. 10. 6 : 한·EU FTA 서명
- '11. 2. 17 : 한·EU FTA 동의안 유럽 의회 통과
- '11. 5. 4 :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통과
- '11. 7. 1 : 한·EU FTA 발효

▶ 개정 저작권법 추진 경과

- '08. 10. 1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임
- '08. 12. 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09. 4. 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 '10. 9. 24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10. 10. 2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임
- '11. 3. 2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1. 6. 2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 전혜숙의원(2010. 9. 24) 대표발의 및 정부(2010. 10. 28) 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안
- '11. 6. 2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국회 통과
- '11. 6. 30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공포(법률 제10870호)
* 시행일: '11.7.1(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은 '13.7.1)
- '11. 11. 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내용 수정
- '11. 11. 2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 '11. 12. 2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공포(법률 제11110호)
* 시행일: '12.3.15(저작권집권 보호기간 연장은 '13.8.1)

IV. 개정 배경 및 이유

1.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 ▶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07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한·EU FTA 이행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동약안이 2011년 2월 17일 유럽 의회를, 그리고 2011년 5월 4일 우리 국회를 각각 통과하여 공히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 ▶ 한·EU FTA 이행법은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8.10.10, '10.10.28)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9.24) 등 3개의 법안 내용을 담고 있음
- ▶ 한·EU FTA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10.28)은 법안 형식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의안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8.10.10)에 반영되지 않은 한·EU FTA의 독자적 사항만을 담고 있었음
- ▶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EU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8.10.10)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안('11.6.22)을 마련하게 되었음
- ▶ 전혜숙 의원안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단속하여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2.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 ▶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한·미 FTA 이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상호교환(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것임
- ▶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 5일 변재일 의원, 2009년 4월 2일 최문순 의원, 그리고 2011년 3월 25일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원제 의원이 대안의 성격을 가진 법안을 2011년 11월 2일 발의한 것임
- ▶ 한·미 FTA 이행법은 한·EU FTA 이행법에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한·미 및 한·EU FTA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작물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V. 주요 개정 내용

1.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관련 규정에 따라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설정함
-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함
- ▶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함
-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고, 종전 저작권법에서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되고 있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무력화 도구 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가적인 보호로 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국가의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 기존 호스팅 서비스 중심으로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함

2.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함
- ▶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 설정 행위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 OSP의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함
- ▶ 위조 및 불법리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하도록 함
-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

VI. 조문별 개정 내용

1.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제22조제2항, 제35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제2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신 설></p>	<p>제22조(정의) 22. _____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_____</p> <p>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개정 배경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이 복제물의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변화
 - 이러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 미국·EU·일본 등 86개국 이상이 일시적 복제를 인정(2004년 기준)하고 있으며, 일시적 복제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시적 복제를 명시하면서 예외를 정하는 방식(EU형)과 일시적 복제의 예외만을 정하는 방식(미국·일본형)으로 구분

개정 내용

-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함(제22조제2항 및 제35조의2 본문)
 - * “일시적” 복제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시적 저장이 당연히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 일시적 저장이 있을 수 있음
 - * 미국의 경우, 1993년 MAI 판례 등을 통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확립된 바 있음
- ▶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더라도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35조의2 단서)
 - *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상당한 이용허락(법정허락 포함)이 없거나 저작권 제 한시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행위,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저작물 이용행위 등을 말함

개정 효과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 도모
- ▶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및 유통 기술 발전 등 가변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Q&A

- Q1**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신문기사를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A1**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어도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웹서핑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한되지 않음
- ▶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웹서핑 등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 또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시적 복제를 이유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은 없었음

※ 일시적 복제를 포함한 복제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고의·과실로 복제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움

Q₂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라는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움.

A₂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일시적 복제의 여러 형태들을 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음

- ▶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buffering)이나 캐싱(caching)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이에 해당함.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시적 복제가 반드시 이용에 부수적이어야 한 다거나 불가피한 것일 필요도 없음

Q₃ 일시적 복제의 인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예측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는가?

A₃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시적 복제로 인한 간접책임(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형법상 방조책임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음

- ▶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법 제102조 및 제103조)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만 준수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임

Q₄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가?

A₄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정리될 수 있음

- ▶ 첫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부터 (또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법정허락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행위(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사적복제 등 각종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행위를 의미함
- ▶ 둘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이 특별히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2. 공정이용 규정 도입 (제35조의3)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신 설〉	<p>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p> <p>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개정 배경

- ▶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필요

개정 내용

- ▶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 ▶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

개정 효과

- ▶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형성을 유도함

Q&A

- Q₁** 이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A₁** 공정이용 조항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정한 이용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UCC 등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이용행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는 규정에 예시된 기준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됨

- ▶ 공정이용의 해당여부는 영리성 유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 질 것임
- ▶ 예를 들어, 발행된 음악을 틀고 이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고,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Q₂**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 아닌가?

- A₂** '보도·비평·교육·연구'는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 ▶ 공정이용 조문 신설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의 대표적 목적의 예를 제

시한 것으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목적의 이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

- ▶ 기존 인용규정(제28조)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하여 인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음

【관련 판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 종략 -

사건 게시물의 인용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 열거된 목적은 예시적인 것이고 열거적인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 이하 생략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Q₃ 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이용 규정과 기존의 제한규정(특히, 인용 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A₃ 공정이용 규정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존재하는 영역(예를 들면,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에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중첩의 여지가 있지만, 인용에 관한 조항을 저작물의 이용 일반에 무한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을 것임

Q₄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임

-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음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제107조)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란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포괄적 지침의 성격을 가짐

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제39조 내지 제42조, 부칙 제1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p><신 설></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p> <p>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_____ 저작자가 _____ 사망한 후 70년간 _____.(단서 삭제) ② _____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_____.</p> <p>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_____ 70년간 _____ 70년이 지났다고 _____ 저작자가 사망 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_____. ②(현행과 같음)</p> <p>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_____ 70년간 _____ 70년간 _____.</p>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p>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p>	<p>영상저작물의 _____ 70년간 _____ 70년간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개정 배경

- ▶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임
- ▶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부칙 제1조)
 - *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
- ▶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변경함

개정 효과

- ▶ 보호기간 연장으로 저작물의 보호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촉진

- ▶ 우리나라가 콘텐츠 수입국에서 점차 수출국의 지위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콘텐츠 수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율(08~09)	연성장률(05~09)
수출규모(억불)	130	13.7	19.4	23.4	26.0	11.4%	18.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산업통계」

- ▶ 한편 개정안에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보호기간 연장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 부담액은 연간 약 7억원으로 추계(출판 분야 약 21억원, 캐릭터 약 50억원) (2007, 문화관광연구원)

Q&A

- Q1**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유럽연합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국민의 저작물에도 적용되는가?
- A1** 비록 보호기간의 연장이 한·EU FTA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한·EU FTA의 당사국인 유럽연합 국가들 이외의 다른 국가 국민의 저작물도 동등하게 적용됨.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경우에 그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베른협약 제7조제8항 참조)

4. 배타적발행권 [제7장 및 제7장의2(제57조 ~ 제63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2 법률 제11110호]
<p>제57조(출판권의 설정)</p> <p>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p> <p>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p> <p>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p> <p>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p>	<p>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p> <p>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배타적발행권 배타적발행권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p> <p>④ 저작재산권자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배타적발행권</p> <p>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p> <p>① 배타적발행권자 배타적발행권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p> <p>② 배타적발행권자 배타적발행권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p> <p>③ 배타적발행권자 복제물 저작재산권자</p>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단서 신설>
-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
-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① 배타적발행권 발행등을 한 .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 제1항에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 배타적발행권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 제1항에도 배타적발행권
- ③ 제2항 배타적발행권 배타적발행권자 배타적발행권
- ④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 발행등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배타적발행권 배타적발행권 복제물
- 1. 배타적발행권
 - 2. 배타적발행권 저작재산권자 발행 복제물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칙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p>〈신 설〉</p>	<p>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제54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p>
---------------------	---

개정 배경

- ▶ 그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 설정 행위를 다양한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 ▶ 그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 등에도 인정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이 경우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함(제57조 내지 제62조)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배타적발행권의 하나의 유형이므로 이를 배타적발행권에 포섭하고, 출판권은 출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에 대해서만 별도 특례를 유지(제63조, 제63조의2)
- * 기존 출판권에 적용되었던 표지인무, 소멸 후 배포 등은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으로 포섭하고 출판권이 이를 준용토록 함

- ▶ 배타적발행권 확대 도입에 따라 출판권 설정 등록에 관한 지방세도 기존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에 맞춰 통일시킴(부칙 제8조)

중전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p>제28조제1항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권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p> <p>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p> <p>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p> <p>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p>	<p>제28조제1항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권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p> <p>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p> <p>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p> <p>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p>

개정 효과

- ▶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가 기존의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출판 등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저작물 이용자는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해짐
- ▶ 배타적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설정행위에 따라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혼동을 미연에 방지

Q&A

- Q₁** 새롭게 도입되는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₁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함

- ▶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임

※ 이에 기존 저작권법 제10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복제·배포·복제·전송)은 삭제되었음

Q2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자와 상관없이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가?

A2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 즉,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함

Q3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됨에 따라 이미 설정받은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가?

A3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출판권 설정 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 ▶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으나 출판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발행권 규정에 준용(제63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

Q4 이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없이 전자출판이 가능한가?

A3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함

- ▶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13.15)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함

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제64조, 제86조, 부칙 제1조 · 제4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3(생략) <u>〈신설〉</u></p>	<p>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3(생략) 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u>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u> 2.~3(생략)</p>	<p>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3(현행과 같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3(현행과 같음)</p>
<p>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p>	<p>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생략)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u>〈단서 신설〉</u></p>	<p>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저작권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권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권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인접권이 회복된 실연·음반·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권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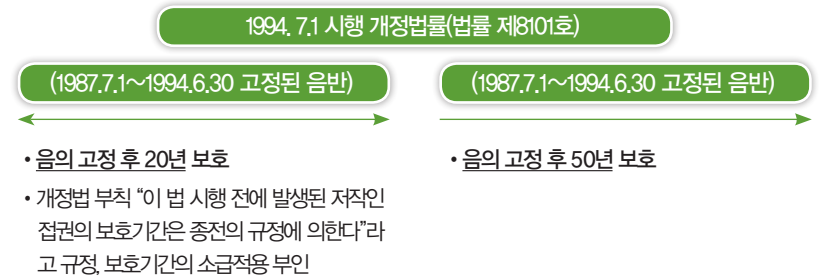
개정 배경

▶ 한·미 FTA 협정에서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함

*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한·EU 이행법에서 기(既)반영

▶ 1994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저작권인접권(1987.7.1~1994.6.30)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부칙 개정 필요

* 이 시기는 이선희, 김광석, 김건모, 이문세, 서태지와 아이들 등이 활동했던 한국대중음악의 르네상스기로서 이 시기의 명곡·명음반의 국내외적 충분한 보호 필요



개정 내용

▶ 저작권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기(既)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2조)

* 방송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조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준비할 필요 있음

▶ 외국인의 저작권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를 명시

*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짧게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 적용 제외(상호주의)

▶ 개정안 부칙에 저작권접권 보호기간 특례 신설

- 1987년 7월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접권에 대해 그 발생한 해의 다음해 부터 기산하여 50년 보호
- 법 시행 전에 보호기간이 종료된 권리의 회복
- 법 시행 전에, 보호가 회복되는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면책

개정 효과

- ▶ 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 연장으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
- ▶ 한국대중음악 르네상스기의 소중한 음반 등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권접권자간의 다른 보호기간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

Q&A

Q₁ 이번 한·미 FTA에서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만을 연장한 이유는?

A₁ 한·EU FTA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11. 7. 1 시행)에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50년으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시행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시행일 2013. 7. 1)

- ▶ 이에 이번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방송은 제외)하게 되었음
- ▶ 다만, 한·미 FTA에서 보호기간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페루 FTA가 발효('11. 8. 1)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에 대한 시행일은 2013년 8월 1일이 됨

Q₂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인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의 국민의 저작물에도 적용되는가?

A₂ 비록 보호기간의 연장이 한·EU 및 한·미 FTA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 ▶ FTA의 당사국인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 국민의 저작물도 동등하게 적용됨
- ▶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 그 국가에서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기간만큼만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Q₃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₃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음
- ▶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권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저작권접권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아래와 같이 창작 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됨(제44조, 제86조)

- ▶ 저작권의 경우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된 다음 해
- ▶ 저작권접권의 경우
 - 실연 : 실연한 다음 해부터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 방송 : 방송한 다음 해부터

- 따라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음. 예를 들어, 저작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발행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62년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보호기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

- ※ 헤밍웨이 : 1961년 사망
 - 보호기간 기산점 및 종기 : 1962.1.1 ~ 2011.12.31
 - 대표작품 : 노인과 바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등
- ※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
 - 보호기간 기산점 및 종기 : 1963.1.1 ~ 2012.12.31
 - 대표작품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Q4 소멸된 권리의 소급보호는 위헌성이 있지 않은지?

A4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한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회복되는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법 시행 후의 행위에만 적용됨

- ▶ 또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이용자가 갖게 되는 지위는 재산권이러기보다는 그 실연·음반·방송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대이익이라는 그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성은 없음
- ▶ 이러한 기대이익의 박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거나 보호의 대상이 추가되는 등의 경우에 늘 발생하는 것으로서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호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항상 수반되는 현상임

Q5 1987년 6월 이전에 발행된 음반의 보호기간은?

A5 1987년 6월 이전에 발행된 음반은 외국인의 음반을 포함하여 개인이 작성한 음반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2013년부터 70년간), 기업 등이 발행한 음반의 경우 발행된 후 50년간(2013년 이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임

- ▶ 1957년법(제정법)은 음반을 저작물로서 저작자 사후 30년 또는 발행 후 30년으로 보호하였음. 그러나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신설하면서도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1986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2조제2항). 따라서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음반은 저작물로서 저작자 사후 50년 또는 발행 후 50년의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 외국인의 음반에 대한 소급보호를 규정한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음반이 국내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하여 국내 음반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부여(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3조)함

6.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제64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신 설>	<p>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p> <p>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개정 배경

- ▶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 ▶ 저작인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추정 규정 신설

개정 내용

- ▶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가 해당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개정 효과

- ▶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 또는 권리 침해시 누가 저작인접권자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해짐으로써 저작인접물의 이용 활성화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구제와 보호 강화

7.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안 제85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신 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내용

- ▶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 부여

개정 효과

- ▶ 동 조항은 입장료를 받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됨
 -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예가 있음
- ▶ 국내에서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 * 예컨대 상영의 대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업소(음식점, 술집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Q&A

Q1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함에 따라 TV방송을 틀어주는 모든 영업장(음식점, 술집 등)이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

A1 이번에 도입된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영업장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제102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p> <p>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p> <p>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p> <p>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p> <p>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p> <p>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p> <p>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지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p> <p>4. 정보검색 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p> <p>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p>
--	--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p>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	---

중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2.2 대통령령 제23338호]
<p><신 설></p>	<p>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p> <p>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개정 배경

- ▶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인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OSP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함

개정 내용

- ▶ OSP의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도구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구체화함
 - 한· EU FTA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11.6.30)에서 OSP의 유형별 면책 요건을 반영하였으며, 한· 미 FTA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11.12.2)에서는 면책 요건에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 계정에 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하였음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단순도관(mere conduit) (제1항제1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캐싱(caching)* (제1항제2호)	OSP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 (제1항제3호)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검색도구 (제1항제4호)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

* 캐싱(Caching)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OSP의 캐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행하게 되는 캐싱과 구별됨

〈OSP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책임 면제 요건	온라인서비스 유형	단순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 도구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제1호 가목)		○	○	○	○
저작물과 수신지를 지정하지 않을 것 (제1호 나목)		○	○	○	
반복적인 침해자 계정에지 정책 실시 (제1호 다목)		○	○	○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제1호 라목)		○	○	○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을 것 (제2호 나목)			○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에 접근허용(제2호 다목)			○		
복제· 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 (제2호 라목)			○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업계에서 인정된 기술 사용방해를 하지 않을 것(제2호 마목)			○		
본래의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 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제2호 바목)			○		
침해행위 통제 권한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 없을 것(제3호 나목)				○	○
침해행위 인지지 해당 저작물 복제· 전송 중단(제3호 다목)				○	○
복제· 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제3호 라목)				○	○

- (제1호 가목 및 나목) OSP가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매개자 역할만을 함
- (제2호 나목)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가 캐시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제2호 다목) 원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 사이트에 이용료의 지불 또는 암호나 그 밖의 다른 정보의 입력에 기초한 조건 등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캐시 서버에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제2호 라목 본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데이터통신규약'의 예 : HTTP 프로토콜, Internet Cache Protocol
- (제2호 라목 단서) 예를 들어, 캐시운영자에게 10초마다 현행화시키는 규칙을 정한 경우, 캐시 운영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 (제2호 마목) 예를 들어, 광고수익을 위한 hit count를 원래 사이트로 돌리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 (제2호 바목) 복제·전송 중단요청으로 원서버에서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명령을 받아 삭제된 경우, 캐시서버에서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제3호 나목)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는 저장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용료, 전송속도 상향, 전송속도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제3호 다목) OSP가 침해사실을 직접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제3호 라목)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는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흔히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유사하게 저작권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지)

개정 효과

- ▶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구분없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OSP의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음
- ▶ 개정법에서는 OSP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OSP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 가능하도록 하였음

Q&A

Q1 권리자가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한 때 OSP가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면 면책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술조치를 말하는가?

A1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면책 요건 중 새로이 추가된 것에 권리자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기술조치를 해당 저작물에 적용하였을 경우 OSP가 그 기술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동 요건에서 말하는 기술조치는 구체적으로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제103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p>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p> <p>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p> <p>① <u>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u></p>

개정 배경

- ▶ 제102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면책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절차를 유형별로 명확히 함

개정 내용

- ▶ 권리주장자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에서 도관 서비스 제공 OSP 제외
- ▶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 OSP 및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OSP의 유형을 명확히 함

〈복제·전송 중단 사실의 통보 여부 비교〉

구분	종전법		개정법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도관서비스 (제102조제1항제1호)			×	×
캐싱서비스 (제102조제1항제2호)			○	×
저장서비스 (제102조제1항제3호)			○	○
검색서비스 (제102조제1항제4호)			○	○

• 종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구분 없이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 대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이었음

개정 효과

- ▶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그에 따른 중단 및 통보 의무를 OSP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 하여, OSP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Q&A

- Q₁** 중단 요구 대상 및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OSP를 구분하는 이유는?
- A₁** 도관서비스는 단순히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므로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유형의 OSP가 아니므로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
- ▶ 캐싱·저장·검색 서비스의 경우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므로, 권리주장자로부터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아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 캐싱서비스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의 경우, 원 서버에서 이미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캐시 서버에 그대로 올려져 있는 저작물 등을 내려달라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 불필요

10.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제103조의3)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①(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1.~3(생략)</p> <p>〈신 설〉</p>	<p>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p> <p>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6조(벌칙)</p> <p>①(생략)</p> <p>② _____</p> <p>_____.</p> <p>1.~3(생략)</p> <p>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p>

개정 배경

-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권리 주장자가 침해혐의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남용하는 문제 발생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권리주장자가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OSP로부터 침해혐의자의 신원 정보 파악 필요

개정 내용

- ▶ 권리주장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OSP에게 요청하였으나 OSP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무분별한 정보 제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의 청구를 하기 전에 OSP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함
-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성명·주소 등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함)

개정 효과

- ▶ 침해 혐의자의 신원정보 파악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가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Q&A

Q₁ 권리주장자가 소송제기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A₁ 종전에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주장자가 침해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 등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

▶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위해서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남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Q₂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도입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A₂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시 권리주장자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침해자의 정보 획득 가능

Q₃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침해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A₃ 동 규정은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에게 최소한의 효율적인 대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것임

▶ 무분별한 정보 제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의 청구를 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지구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권리주장자가 제공된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침해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Q₄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제도는 한·미 FTA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가?

A₄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제도는 한·미 FTA로 인하여 도입되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지침(제15조)에서 회원국들이 재량으로 침해자의 정보 제공 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Article 15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2. Member States may establish ——— obligations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s.

※ 제15조, 모니터 의무 부정

2.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OSP)로 하여금 그들의 서비스를 수신하는 자에 의한 불법한 활동이 행해지거나 불법한 정보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소관 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만들 수 있고, 소관 관청의 요구에 서비스제공자가 저장계약을 갖고 있는 수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만들 수 있다.

11.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및 면책 요건 규정(제2조제28호, 제104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8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p>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p> <p>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p>
<p>〈신 설〉</p>	<p>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p> <p>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p>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보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p> <p>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p> <p>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어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가능하는 것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②</p> <p>1.~3.(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04조의2(침해의 방지·예방 청구 등)</p> <p>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방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방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p>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②</p> <p>1.~3.(현행과 같음)</p> <p>3의2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p> <p>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p>
--	--

개정 배경

- ▶ 기존 '이용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의 증가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저작물 이용행위(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것(예 : CD 복제 방지장치)
 -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거나 그 저작물 자체를 향유(재생 및 작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예 : 복제는 할 수 있더라도 불법복제된 것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장치)

개정 내용

- ▶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 신설

* 판례상으로는 접근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보호하고 있었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 사건(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 ▶ 한편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까지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면책함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제104조의2 제1항 각 호)

-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온라인상의 개인식별정보(일종의 쿠키 정보) 수집 방지, 국가의 법집행 등,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구입 여부 결정, 리버스엔지니어링, 보안 검사,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미국 저작권법상 룰메이킹(Rule-making)에 해당)
- * 미국과 FTA 체결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행정부(호주는 총리, 싱가포르는 법무부장관)에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위한 장치 등의 유통 및 서비스 제공 행위 금지(제104조의2 제2항)
-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무력화 도구 거래 행위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거래 행위 등의 범위

- (제1호) 어떠한 장치, 제품, 부품(이하 '장치 등'이라 함)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용도와 그 외의 용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용도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홍보·광고·판촉되는 경우
- (제2호) 어떠한 장치 등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으나, 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의미만 있는 경우
- (제3호) 어떠한 장치 등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경우

-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거래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접근통제와 이용통제를 구분하여 규정함(제104조의2제3항)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거래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3항제1호)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제3항)의 예외 규정들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데 따르는 예외이므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도구의 거래에도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그러한 도구의 사용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활용되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제3호)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상 널리 이용되는 일반적인 쿠키(cookie)의 수집행위 자체를 막는 도구의 거래를 인정할 경우, 인터넷 사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외의 적용을 배제
- (제5호) 도서관등에서 구입 여부 결정을 위한 경우는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그러한 도구가 유통될 경우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예외의 적용을 배제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거래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3항제2호)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되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둠
 - (제4호) 국가의 법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국가 전산망의 DDoS 공격에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금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제6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은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저작권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행위(제10조의4),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통제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위반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규정(제104조의 8, 제136조제2항제3호의2)

※ 개정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금지행위로 규제(중전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

- (민사구제) 중전 저작권법에서는 침해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민사구제 규정(제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금지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구제 규정을 둠(제104조의8)
- (형사처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전 저작권법의 요건(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을 그대로 적용하여 형사처벌

개정 효과

-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다만, 공정이용을 위한 보호의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와 이용 측면을 균형 있게 조화

Q&A

Q₁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를 인정할 경우, 기존의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권리(접근권)를 창설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A₁ 디지털 이용환경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 이를 무력화 하거나 무력화하는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리(접근권)의 부여와는 차이가 있음

- ▶ 중전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만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를 통하여 일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음.

-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를 최소화하였음

Q₂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는?

A₂ 아이폰에서의 탈옥(jail breaking) 행위, 합법적으로 취득된 DVD에 적용된 CSS(Content Scrambling System)를 교육 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일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5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12. 1. 31 ~ 2015.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 ① 비평 또는 논평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된 영상물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적용된 콘텐츠 뒤섞기 시스템(Content Scrambling System)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적 이용
 2.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3. 비상업적인 영상물
-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한다)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 ③ 프로그램 복제물 소유자가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 ④ 보안상 결함이나 취약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컴퓨터용 비디오 게임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 ⑤ 더 이상 제조 또는 시판되지 않는 동글(Dongle)의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 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낭독 기능
 2. 텍스트를 대체 형식으로 변환하는 화면 읽기(Screen Reader) 기능

12.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제104조의3)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6.30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신 설>	<p>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 관리 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p>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개정 배경

- ▶ 종전 법에서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로 한정된 보호 범위를 바코드·QR 코드 등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까지 확대하여 권리관리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장 필요

개정 내용

- ▶ 종전 저작권법에서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침해 간주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별도의 금지 행위로 규정

-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대상에 전자적인 형태의 것뿐만 아니라 비전자적인 형태의 것까지 포함하고, 허위의 권리관리정보 자체의 배포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제104조의3)
- ▶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침해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민사구제 규정(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금지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구제 규정을 둬(제104조의8)

개정 효과

- ▶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리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Q&A

- Q₁** 비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A₁** 전자적이란 전자적(電子的, electronic), 전자적(電磁的, electro-magnetic) 양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광자기적(magneto-optical) 또는 광학적(optical)인 자체로는 전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음
- ▶ 광학식 마크판독장치로 읽을 수 있는 바코드(bar code)나 스마트폰 등으로 읽을 수 있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등이 비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예로 들 수 있음

13.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제104조의4)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3의4(생략) 〈신 설〉</p>	<p>제136조(벌칙) ①(생략) ② _____ _____ . 1.~3의4(생략)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생략) 〈신 설〉</p>	<p>제137조(벌칙) ① _____ _____ . 1.~3(생략)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개정 배경

- ▶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으로 복호화*하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시청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 신설 필요

* 암호화한 것을 디코딩(decoding, 해독)하는 행위

개정 내용

- ▶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복호화기기 제조·배포 등 불법적으로 복호화된 신호를 시청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송신하는 행위 금지(제104조의4)

개정 효과

- ▶ 위성 방송이나 유선 방송의 가입자 서비스는 가입자에게만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복호화하여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시청 질서 확립 및 방송사의 투자 보호에 기여

14.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제104조의5)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2조(정의)</p> <p>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p>
<p>〈신 설〉</p>	<p>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p> <p>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①(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1.~3의5(생략)</p> <p>〈신 설〉</p>	<p>제136조(벌칙)</p> <p>①(생략)</p> <p>② _____</p> <p>_____ .</p> <p>1.~3의5(생략)</p> <p>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p>

개정 배경

- ▶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영화 DVD, 컴퓨터 프로그램 CD 등의 정품 여부를 그 에 첨부 또는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인증서 등을 통하여 구별하므로, 이러한 라벨이나

인증서 등의 위조 또는 불법유통을 통제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라벨은 예를 들어 SW의 경우 CD 케이스 등에 부착되는 조그만 스티커를 말하며, 보통 라이선스 번호가 적혀져 있고 합법적인 복제물 즉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개정 내용

- ▶ 음반, DVD 등 저작물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104조의5)
- ▶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제136조제2항제3호의6)

개정 효과

- ▶ 개별 이용자들이 정품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증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Q&A

- Q₁** 라벨과 권리관리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 A₁** 라벨이란 저작물의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표지, 인증서, 사용허락 문서, 등록카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복제물 즉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 라벨 위조 등의 금지 규정은 라벨을 위조 생산하여 불법복제물을 정품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배포하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품과 같이 배포된 라벨을 따로 떼어 별도로 유통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 반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저작물의 제호, 최초 공표 연도 및 국가, 저작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함

15. 영화 도촬행위 금지 (제104조의6)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 〈신 설〉</p>	<p>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7조(벌칙) ① _____ _____ . 1.~3의2 (생략)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개정 배경

- ▶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과 DVD 출시 및 인터넷 전송 등 창구별로 출시에 시차를 두게 되는데, 휴대용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영화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관객에 의하여 무단으로 녹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경우에는 영상제작자 등 관련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 ▶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제104조의6)
- ▶ 금지 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제137조)

* 개인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도촬행위 특성상, 그 실행을 착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

개정 효과

- ▶ 영상상영관등에서 개인적으로 몰래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통되는 영상저작물(소위 '캠버전')이 줄어들어, 건전한 영상저작물 유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A

Q₁ 영화관에 갈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A₁ 영상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했다고 하여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

- ▶ 형법(제25조제1항)에서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

Q₂ 영화 도촬 금지 관련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A₂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된 촬영 영상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가능하며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함

- ▶ 실질적으로 녹화나 공중송신을 위해 '실행행위의 착수'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벌 여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임

Q₃ 소위 '도촬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A₃ 영화는 일반적으로 '영화관→DVD(또는 인터넷)→케이블 등 유선방송' 등 창구별로 출시의 시차를 두고 배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지털 파일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수단이 요구됨

- ▶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영화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보기 위해 촬영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음
- ▶ 따라서 도촬금지 규정은 영화 유통 구조의 특성 및 우리 저작권법 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임

※ 일본의 경우 도촬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5.30. 법률 제65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죄에 대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7)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36조(권리의 침해죄)</p> <p>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p> <p>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6조(벌칙)</p> <p>㉔ _____</p> <p>_____.</p> <p>1.~3의6 (생략)</p> <p>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자</p>

개정 배경

-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에 우리나라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2011년 12월 9일 가입서 기탁, 2012년 3월 19일 발효

개정 내용

- ▶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104조의6, 제136조제2항제3호의7)
-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제2조
각 계약국은 위성으로 송출되거나 위성을 통과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향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배포지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혹은 그 영역으로부터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효과

- ▶ 방송전 신호의 무단 송신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방송 환경 조성

17.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125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p> <p>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p> <p>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p> <p>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개정 배경

- ▶ 저작권 침해행위는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움
- ▶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

개정 내용

- ▶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미국의 경우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규정(750달러~30,000달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법정손해액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음
-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로 명확히 함
- ▶ 법정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규정함

개정 효과

- ▶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 및 관련 증거 확보의 곤란함을 보완하여 침해를 억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 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적 해결방식이 아닌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 증대 기대
- ▶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제고

Q&A

- Q₁** 법정손해배상이란 무엇이며, 법정손해배상 도입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 A₁**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는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기존의 실손해 배상원칙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하지만 개정저작권법은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못하는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음

- Q₂**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A₂**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침해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서, 자칫 하한선을 책정할 경우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비례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
 - *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건수가 아닌 침해된 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는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만 건의 저작물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한선을 정할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상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법정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으로 결정할 것임

18.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제129조의2)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신 설>	<p>제129조의2(정보의 제공)</p> <p>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개정 배경

- ▶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법원이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개정 내용

- ▶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침해 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영업비밀·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었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개정 효과

- ▶ 소송과정에서 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9.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3 ~ 제129조의5)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신 설〉</p>	<p>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p> <p>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p> <p>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p>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p>

<p>〈신 설〉</p>	<p>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p> <p>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p> <p>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은 제1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p> <p>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	---

〈신 설〉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지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개정 배경

- ▶ SW 소스코드 등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어 소송목적 외 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 있음

개정 내용

- ▶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 영업비밀의 누출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는 수준의 처벌 부과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36조)

개정 효과

- ▶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영업비밀을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사자가 영업비밀과 관 련된 사항을 용이하게 제시하여 침해행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충실을 도모

20. 몰수(제139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p>	<p>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p>

개정 배경

- ▶ 한·EU FTA에서 불법 복제물과 함께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제작도구 또는 재료도 몰수대상에 포함

개정 내용

- ▶ 몰수의 대상에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개정 효과

- ▶ 몰수 대상에 불법 복제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도구 또는 재료를 포함함에 따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1. 비친고죄 대상 확대 (제140조)

개정 조문 대비표

종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p>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p>	<p>제140조(고소) _____ _____ _____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삭 제></p>

개정 배경

- ▶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익도 침해되므로 이에 대하여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ex officio)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의 침해는 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명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권 유통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음

개정 내용

- ▶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 and 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확대

개정 효과

- ▶ 비영리 목적이거나 하더라도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보호가 가능하여 심각한 산업적 피해 감소 기대

Q&A

Q₁ 친고죄가 폐지되면 SW 등 일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데 사실인가?

A₁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의 원칙이 적용되되, 다만 비친고죄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임

- ▶ 일부 SW업계는 비친고죄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
- ▶ 친고죄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법적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친고죄 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국가(검찰)가 판단토록 할 필요성 존재
- ▶ 침해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공익이 아닌 저작권자만의 것이라면,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독자적으로 처벌할 실익이 적으므로 기존의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저작권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지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리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제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③ 제항 및 제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④ 제항 및 제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② 삭제

제5조(2차적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야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호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호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 허락, 제6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2>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제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4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2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

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시행일 : 2013.7.1]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40조제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 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항의 규정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주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개정 2011.12.2〉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제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에서 이동 (개정 2011.12.2)]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11.12.2)] 〈개정 2011.12.2〉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③ 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12.2)] 〈개정 2011.12.2〉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12.2>] <개정 2011.12.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개정 2011.1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12.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1. 실연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 2013.8.1]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7조(공동실연자)

-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6.30]

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시행일: 2013.8.1]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11.12.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 제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 2011.12.2)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 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산설 2011.12.2>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 삭제 (2011.12.2)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들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

- 야 한다. <개정 2011.6.30>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12.2]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기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가능하는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

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중전 제104조의4는 제104조의8로 이동 <2011.12.2>]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8(침해의 방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방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방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104조의4에서 이동 <2011.12.2>]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 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재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처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3조의2(알선)

-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정부)

-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제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조정 신청 등)

-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7조(조정 성립)

-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조정비용 등)

-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감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② 제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121조 삭제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2>

제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제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9조의3제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3조제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63조제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3조제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제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삭제

제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12.2〉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개정 2011.12.2〉

제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제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2〉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부칙

부칙 (제8101호,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제9529호, 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5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85호,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07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0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권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권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권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인접권이 회복된 실연·음반·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권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록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10.13] [대통령령 제23721호, 2012.4.12,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견권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지급 근거
- 2. 지급 기준 및 대상
- 3. 지급 방법
-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 4. 저작권 보호 사업
-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 2. 승인신청 금액
- 3. 보상금 사용 목적
- 4. 보상금 사용 계획
-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미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리조트·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제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 나.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

는 시설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線)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7조(출처 명시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2>

-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2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73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시행일 : 2012.10.13]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 것
-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추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의 종류
- 2. 인증기준
-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시
-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시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9조의2(임차기관)

법 제10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12.2〕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권리주장자는 상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상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복제·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전송자는 상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상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11.12.2]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3. 해당 복제·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사실

[본조신설 2011.12.2]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 제한 조치
 -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저작물등의 제호
- 2.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저작물등의 목록
-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2조(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8조제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1. 제50조 각 호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2.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등의 권리 정보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법 제109조제항제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으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알선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조정절차 등)

-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③위원장은 제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절차의 불성립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 ①법 제119조제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① 법 제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5.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제69조(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제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3. 계사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 물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복제·전송자의 계정
-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3. 위법 행위의 내용
-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2.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명령 이행 일자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위법 행위의 내용
- 2. 권고 사항
- 3. 시정 기한
-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4조 삭제 (2009.7.22)

제75조(기증 절차)

-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②제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0135호, 2007.6.2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76호, 2008.2.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25> 까지 생략
 -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77조제1항·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7조제1항·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부칙(제21148호, 2008.12.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21634호, 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프트웨어의 관리·유통 전담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1676호, 2009.8.6)(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㉕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03호, 2010.12.7)(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01호, 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8호, 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1호, 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물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신설 2009.7.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미처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별표 2] <신설 2009.7.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경고	500	1,000
나.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라.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300	500	700
마.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부록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4.5,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4. 공탁금액
-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6. 공탁근거
-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1. 저작권 등의 등록
 -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 등록신청명세서)
 - 나. 삭제 <2009.7.24>
 -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3.15]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합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합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합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시행일 : 2012.3.15]

제8조(등록증)

① 위원회는 영 제28조제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 5의2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및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등록증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 2012.3.15]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등록증

-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시행일 : 2012.3.15]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시행일 : 2012.3.15]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 ①영 제37조제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 2012.3.15]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 2012.3.15]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 2012.3.15]

제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제21조 (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 (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삭제 (2012.4.5)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09.7.24)

부칙 (제166호,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①9 까지 생략

②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1 부터 ②4 까지 생략

부칙 (제37호, 2009.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2011.12.2>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경우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별표 제2호·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개정 2012.4.5)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9,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000원	
6. 영 제30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3,000원	2,000원	
7. 법 제55조제3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800원	

비고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나.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수수료는 2분의 1을 감액하지 아니한다)한다. 이 경우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